

한·콜롬비아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교역영향

I. FTA 개요 및 현황	3
II. 한·콜롬비아 FTA 추진현황	4
III. 한·콜롬비아 일반현황 및 교역현황	6
IV. 한·콜롬비아 FTA 타결내용 및 영향	9
V. 콜롬비아 식품시장 진출확대 방안	16

< 부록 >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1
2.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 발표문	23
- 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 공동선언문	
-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3.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 수출현황	32
4.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 수입현황	35
5. 우리나라의 바나나, 커피류 국가별 수입현황	38

요 약

- 한-콜롬비아 FTA는 남미시장 선점 및 풍부한 자원(원유, 니켈 등) 확보 등을 위해 '09.11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2.6.25일 양국 정상회담시 타결 선언
 - 중남미 국가에서는 페루, 칠레에 이은 세 번째 FTA국가
 - * 6. 25 참전국 등의 전통적 우호관계로 감사와 유대감이 강함
- 한-콜롬비아간 교역동향을 보면 작년('11)에는 국가전체 무역수지는 12억 3천만불 흑자이지만 농수산물식품 무역수지는 1억 2천만불 적자를 나타냄
 - 수출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대부분 차지
 - 수입은 커피류, 원유, 합금철, 유연탄 등 광물 위주임
- 한-콜롬비아간 농수산물식품 부문 교역품목('11)을 보면,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 혼합조제식료품, 인삼제품, 라면 등 주로 가공식품이며 수입품목은 커피류(생두, 원두), 기타절화(장미, 국화), 우황, 사탕수수당, 초코렛, 팜유, 바나나 등임
 - (기회) 커피류 등 열대성 원료 농산물의 수입경쟁 심화로 수출 가공식품의 원가인하 등의 긍정적 작용 기대, 현지 한류 열풍의 적극 활용
 - 고품질 기반의 고급시장 진출 확대 및 식품검사기준 등 규제,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로 당사국 및 남미시장 진입 용이 예상
 - (위협) 현재 수입되고 있는 콜롬비아산 절화류(장미, 국화 등)의 점진적 관세 철폐(3~7년)로 국내 동종산업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 경쟁적인 국내동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에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식품안전기준 강화, 수입유통이력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증진 필요
- 콜롬비아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K-pop, 자동차, 전자제품 등 문화, 경제적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K-food로 이전 확산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향후 한-콜롬비아 FTA과제는 '12년 하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추진 예정으로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월말 또는 '13년초 발효 전망됨

한 · 콜롬비아 FTA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교역영향

I FTA 개요 및 현황

■ FTA는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지역무역협정의 대중을 이룸
-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협상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 한국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발효 (8건, 45개국)	·칠레('04) ·인도('10) ·미국('12) ·싱가포르('06) ·EU('11) ·EFTA(4개국 '06) ·페루('11) ·ASEAN(10개국 '09)
타결 (2건, 2개국)	·터키('12.3월) ·콜롬비아('12.6월)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05~) ·호주('07~) ·중국('12) ·GCC(6개국 '07~) ·뉴질랜드('07~) ·멕시코('07~) ·인도네시아('12)
협상준비, 공동연구 (8건, 15개국)	·일본('03) ·베트남('11) ·한·중·일('03) ·몽골('08) ·MERCOSUR(4개국 '05) ·중미(5개국 '10) ·이스라엘('09) ·말레이시아('11)

* 자료 : 외교통상부, 7월 현재

*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에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은 49.2%로 추정되고 있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자료 : 외교통상부)

II 한 · 콜롬비아 FTA 추진현황

■ 한 · 콜롬비아의 FTA 의의

- 석유, 광물 등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으로서 지난해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남미 국가에서는 페루, 칠레에 이어 세 번째 FTA 국가에 해당

-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FTA정책으로 중남미의 FTA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협상을 타결한 바,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 중남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수 '10년 14개 → '12년 28개로 증가

■ 한 · 콜롬비아의 FTA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09. 3~9월 : 민간공동연구
- '09. 3~'12.4월 :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09. 6. 25 : 양국간 FTA협상타결 공식 선언
- '12년 하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추진 예정

〈향후 계획 : 협정 내용〉

- 협상타결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된 이후,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 추진
 - 양측 법률검토팀은 7.23(월)~7.27(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 검토회의 개최 예정
 -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 양국은 또한 협정문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시켜 조속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 *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년말 또는 '13년초 발효 예상

※ 콜롬비아의 주요 FTA 체결현황(기체결 9개, 협상중 4개)

1)콜-미 FTA(2012.5.15 발효), 콜-페루-EU FTA(2012.6월 서명예정), 콜-캐나다 FTA(2011.8월 발효), 콜-멕시코 FTA(1995.1월 발효), CAN(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MERCOSUR FTA(2005.4월 발효)

2)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4개국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2012.6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창설협정에 서명

■ 한·콜롬비아 FTA의 기대효과

- 콜롬비아는 Economist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이자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며,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 교역구조 및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측의 고관세(예: 승용차 35%)를 감안할 때 이상적인 FTA 파트너임
-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한-콜 FTA는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콜롬비아는 금년 5월 미국과 FTA 발효, 올 하반기 EU와 FTA가 발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콜 FTA 타결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칠레, 한-페루 FTA에 이어 세 번째 FTA로서,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재개·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 구축 실현

III 한 · 콜롬비아 일반현황 및 교역현황

가 일반현황 및 교역현황

■ 일반현황

구 분	한 국	콜롬비아
면 적	99,720km ²	1,141,748km ²
인 구	4천 9백만명	4천 6백만명('10)
명목GDP	1조 1,638억달러('11)	3,215억달러('11)
실질GDP성장률	3.6%('11)	5.9%('11)
1인당 GDP	21,529달러('11)	6,980달러('11)
GDP (구매력평가PPP기준)	1조 5,561억달러('11)	4,676억달러('11)
총교역규모	1조 808억달러	1,117억달러

자료 :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IMF

■ 대 콜롬비아 전체 교역 동향 : '11년 1,996백만달러

- 총 교역액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 12.3억불 흑자)
- 주요 수출입 현황(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 승용차(4.6억불, 28.6%), 자동차부품(3.7억불, 22.8%)
 - 수입 : 커피류(1.1억불, 30%), 원유(75백만불, 19.7%), 합금철(59백만불, 15.5%)

■ 대 콜롬비아 교역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교역액	1,119	1,237	1,234	922	1,821	1,996
수 출	913	1,121	1,091	797	1,389	1,615
수 입	206	116	143	125	432	381
무역수지	707	1,005	948	672	957	1,234

(단위 : 백만불,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1년 주요 교역품목 (MTI4단위)

순 위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콜롬비아의 대한민국 수출				
	품 목	2010		2011		품 목	2010		2011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1	승용차	27.6%	383	28.6%	462	커피류	16.0%	69	29.9%	114
2	자동차부품	25.9%	360	22.8%	369	원유	9.0%	39	19.7%	75
3	합성수지	5.1%	71	6.4%	104	합금철	17.9%	77	15.5%	59
4	화물자동차	3.6%	51	4.0%	64	유연탄	38.5%	167	9.4%	36
5	원동기	3.7%	51	3.2%	52	동괴및스크랩	6.9%	30	8.4%	32
6	기타석유 화학제품	2.4%	33	3.0%	48	고철	1.2%	5	5.0%	19
7	타이어	2.1%	29	2.7%	44	알루미늄괴 및스크랩	2.6%	11	2.9%	11
8	공기조절기	0.6%	8	2.2%	35	농약	2.7%	12	2.4%	9
9	건설중장비	2.3%	32	1.8%	29	의약품	0.8%	4	2.1%	8
10	섬유기계	0.9%	12	1.5%	24	소가죽	1.0%	4	0.8%	3
	상위 10위 소계	74.2%	1,030	76.2%	1,231	상위 10위 소계	96.6%	418	96.1%	366
	총계	100%	1,389	100%	1,615	총계	100%	432	100%	381

* 자료 :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투자 현황

- 한국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총 2.6억불로 도소매업(72.7%), 제조업(18.8%) 및 광업(8.3%) 분야에 집중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대한투자	건수	—	1	1	1	—	—	3
	금액	—	107	54	450	—	—	611
대콜투자	건수	3	3	3	7	6	16	70
	금액	4,859	21,925	1,034	34,075	38,606	118,609	260,426

(단위 : 천불, 신고기준 / 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FTA로 인한 경제영토 확대 효과

- '07년 6.0% → '12.6월 현재 60.9%

(경제영토 : 우리나라 GDP와 우리나라의 FTA발효국가의 GDP를 합한 것을 전세계 GDP로 나눈 비율)

* 2007년 산출기준

: 2007년말 FTA발효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GDP + 한국 GDP / 세계 GDP (2007년 기준)

* 2012.6월 현재 산출기준

: 2012.6월 현재 FTA비준, 발효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GDP + 한국 GDP / 세계 GDP (2009년 기준)

* 한-터키 FTA 발효시 1.2% 추가 효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시 0.5%추가 효과

나 농수산물 교역현황

■ 한·콜롬비아 농수산물 교역동향 : 123백만불(121백만불 적자)

● 최근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농수산물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

(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221	213	85	476	1,400
	농산물	111	106	64	474	1,254
	축산물	4	0	0	0	4
	임산물	43	91	0	1	0
	수산물	63	16	21	1	142
수입(B)	합 계	36,324	47,752	56,823	74,278	121,912
	농산물	34,321	47,037	55,234	72,479	119,705
	축산물	1,910	357	1,105	1,487	1,554
	임산물	4	4	0	24	14
	수산물	89	354	484	288	639
무역수지(A-B)		-36,103	-47,539	-56,738	-73,802	-120,512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 대 콜롬비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기타음료	커피
2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3	삼치	기타절화
4	백삼조제품	우황
5	물	사탕수수당
6	라면	초콜릿
7	기타사료용조제품	기타과실
8	감초엑기스	어류유지
9	선인장	팜유
10	기타과실	바나나

* 기타 과실류 :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

* 기타 절화는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임 /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IV

한·콜롬비아 FTA 타결내용 및 영향

가 협상타결 주요내용

-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 (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부록 자료 참조

● 상품양허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확보

주요품목 한-콜롬비아 관세 철폐 계획

콜롬비아	품목	현행 관세율(%)	무관세 계획
	승용차	35	10년 내
	디젤승용차 (1500-2500cc)	35	9년 내
	자동차 부품	5~15	즉시~5년 내
	섬유류	15~20	즉시~7년내

한국	품목	현행 관세율(%)	무관세 계획
	커피	2~8	즉시~3년내
	화훼	25	3~7년내
	바나나	30	5년내
	쇠고기 (뼈 없는 것)	40	19년내

-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 관세, 관세율할당,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쌀(협정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 쇠고기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세번은 19년 관세철폐로 양허
(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필요)
 - * 탈·전지 분유 5개 세번에 대해서는 연간 100톤의 관세율할당 제공
(쿼터내 물량 무관세 수입 / 증량 없음)
-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관세율2~8%)는 즉시철폐~3년내 관세철폐, 절화(cut flower, 25%)는 3년~7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는 5년내 관세철폐
-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정육2개 세번) 및 만다린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아울러,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산업피해 구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적용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음

다 농수산물 부문 교역영향

■ (교역개황)한-콜롬비아 FTA가 내년 초 정식 발효되면 양측의 기존 주력 수출입 상품 위주로 교역이 크게 증가 하는 반면, 우리 농수산물 수출은 단기적인 증가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양국 총교역액은 2011년 기준 19억9600만달러로 FTA 발효 후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

- 콜롬비아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4600만의 국내시장, 석유, 가스, 석탄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안정된 정치, 치안상황 개선, 항공편으로 2~4시간 거리의 미국시장, 4~6% 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한-콜롬비아 FTA협상 타결 등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우호적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음

* 6.25참전국으로 전통적 우호관계로 감사와 유대감이 강함

■ (양허분석)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 등 예외적 취급, 관세 철폐 기간 장기화로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

●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품목(세번 기준 7.9%)은 양허 제외하고, 720개 품목(36.9%)은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 쇠고기(뼈없는 것 2개, 꼬리·족 등 식용설육 3개 세번)는 19년으로 양허 하되, 뼈없는 쇠고기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적용

* 탈·전지분유(5개 세번)는 TRQ 100톤을 제공하되 현행관세 유지

* 국화 등 절화류는 3~10년으로 한·미FTA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양허

● 커피 등 국내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16.2%)은 즉시 철폐

■ (원산지규정)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에 대해 생산공정과 원자재 해외조립 비율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

〈 콜롬비아측 양허 내용 〉

◇ (농산물) 우리 주요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 배, 김치, 라면 등을 포함하여 516개(관세 세번기준 총 54.7%) 품목은 즉시 철폐

◇ (수산물) 모든 수산물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철폐

* 콜롬비아측 對한국 농수산물 수입액의 94.4%(150천불)를 차지하는 품목을 즉시 관세철폐

■ (영향검토) 커피(전체 수입액의 93%) 제외시 수입액이 적고*,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하여 단기적인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 추정

* 對콜롬비아 농수산물 수입액('11) : 122백만불(커피 및 커피관련제품 114, 기타 8)

* 최종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농어업 분야 파급 영향 분석 중(농경연)

■ (수출) 농수산식품은 가공식품 위주로 비교적 다양한 상품이 소량 수출되고 있는데 사과, 배, 라면 등 516개 품목이 관세 즉시철폐로 증가 예상되나 단기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음료, 면류(라면, 국수, 냉면, 당면 등), 인삼제품(차, 백삼, 홍삼 등), 주류(소주,탁주 등), 조제식료품, 과자류 등 가공식품 증가 예상

● 현지 한류 열풍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적 수출마케팅으로 시장확대

- 문화·트렌드의 변화(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문화 확산)
- 최근 한국 김치, 유자차, 김, 소금, 라면 등 K-food 전파

● 콜롬비아 등의 해외 원료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출 추진

- 커피, 자당, 초코렛, 식물성 유지 등을 제조가공하여 제3국 수출
- 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과자류 등

- (수입)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기존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경쟁 심화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나 후생이 증대될 수 있으나 국내생산 동종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절화류의 관세를 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장미·카네이션·국화 등 절화 생산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
 - 여타 153개 민감품목에서 절화류는 빠져 있어 콜롬비아산 장미·카네이션·국화 등은 현행 25%인 관세율이 앞으로 3~7년 동안 모두 철폐될 경우 농가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
 - * 지난해('11)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에 장미 등 신선 절화류 240톤을 수출
 - 관련농가단체는 1) 한·콜롬비아 FTA 농업분야에서 절화류의 관세를 7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것 2)인력을 보강해 정기적으로 국화·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산 화훼류 수입현황

HS 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0603110000	장미 (절화/신선)	3,783	33,350	6,052	80,997	59.98	142.87
0603120000	카네이션 (절화/신선)	6,224	49,019	991	8,040	-84.08	-83.6
0603140000	국화 (절화/신선)	-	-	72	207	-	-
0603199000	기타절화 (신선)	107,639	757,393	232,530	1,665,454	116.03	119.89
0603900000	절화 (신선외 기타)	21,699	207,066	63,221	498,451	191.35	140.72
0602901090	기타 화훼류	14	216	498	8,786	3,457.14	3,967.59

- 이번 FTA로 인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커피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생두와 원두 등 커피는 연간 약 1억1400만 달러이며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

- 최근 품질이 좋은 콜롬비아산 커피의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의 2~8%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단가가 떨어져 커피제품의 가격에도 반영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
 - 장기적으로 수입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콜롬비아산 커피의 가격이 내려가면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 국내 커피 유통시장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인지에 따라 가능할 것이며 관세인하 효과가 유통업체 선에서 그치고 소비자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 * 우리나라 커피 수입관세(FTA)는 생두2%(즉시철폐), 원두8%(3년내 점진적 철폐) / 단기적인 소비자 체감 미약 전망

국내 커피 수입시장

지난해('11)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생두는 3만8743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물량 중 33.3%에 해당하며 이어 브라질은 2만3316톤(20%), 콜롬비아는 1만7197톤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음

대신 베트남산 생두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비교해 수입 단가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액별로 비교해보면 1)브라질 1억1708만달러 2)콜롬비아 1억730만달러 3)베트남 8664만 달러 순임

수입단가는 1kg 당 콜롬비아산이 6.24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브라질산이 5.02달러, 베트남산이 2.24달러임

또한 원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2047톤(37.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탈리아845톤(15.5%), 브라질 568톤(10.4%)으로 집계됐다. 단가는 각각 1)이탈리아 15.47달러 2)미국 12.9달러 3)브라질 10.83달러 순임

=>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국내산업 부문 최대관심은 화훼(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 절화류)이며 수입소비시장 부문에는 커피, 바나나 등이 경쟁가중 전망

※ 원산지표시제, 수입유통이력제 등으로 소비자 알권리 증진 필요

콜롬비아 쇠고기 생산, 소비 및 수출 동향

연도	생산		소비		수출	
	두수	도체(톤)	두수	도체(톤)	두수	도체(톤)
2009	3,825,879	810,068	3,593,474	753,639	232,405	56,429
2010	3,623,662	766,591	3,606,171	762,448	17,491	4,143
2011	3,900,419	820,984	3,889,693	818,441	10,726	2,543

* 자료 : 콜롬비아 통계청,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

○ 콜롬비아 통계청은 2011년도 주재국 쇠고기 생산 및 수출 현황을 발표한 주요 내용

- 2011년 소 총3,900,419두를 도축하여, 쇠고기 도체 820,985톤을 생산한 바, 도축두수는 전년 3,623,662두 대비 7.6%, 도체 생산량은 전년 766,592톤 대비 7.1% 증가함
- 2009년 이후 쇠고기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은 쇠고기 수출의 99%가량을 차지하였던 베네수엘라와의 교역관계 단절에 따른 수출 중단에 기인함

콜롬비아 커피 생산 및 소비 동향

(단위 : 천포대)

구분	2006	2007	2008	2009e	2010e	2011f
커피생산 ¹	11,953.00	12,164.00	12,515.00	8,664.00	8,103.00	9,020.20
커피소비 ²	1,302.00	1,090.00	1,137.00	1,200.00	1,200.10	1,105.40
	2010e	2011f	2012f	2013f	2014f	2015f
커피생산 ¹	8,103.00	9,020.20	9,975.00	10,916.90	11,380.40	11,629.20
커피소비 ²	1,200.10	1,105.40	1,145.20	1,188.90	1,241.20	1,293.30

주) e/f = BMI 측정치/전망, 1포대=60kg 출처: ¹Cafe de colombia, ²USDA, BMI.

■ 시장 특성 및 규모

- 식품시장은 국내총산업생산량의 23%와 산업종사자의 18%를 차지
- 가공식품부문이 전체산업생산량의 21%, 일자리 창출 기여도 17%
- 식품소비는 매년 확대 추세로 '15년에는 '11년 대비 43% 증가 예상
- ('11) 69,312(10억 COP)→ ('15) 98,926(10억 COP)
- 경제성장과 실업률 개선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향후 5년간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소매부분 소비 탄탄한 성장세 예상

■ 식품 및 음료산업 SWOT

강 점	약 점
• 신제품 출시가 비교적 활발함 •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탄탄한 회복추세 • 탄산음료 판매량 '15년까지 25%늘어날 전망 • 커피의 국내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일부 노후한 설비시설과 생산공정 시설로 가공 식품 업계 지속적인 난항 • 소득에 따라 현지소비격차가 큼 • 식품구입 시 가격에 민감 • SABMiller계열사의 장악으로 맥주시장은 다른 기업의 진입이 어려움 • 크지 않은 와인시장
기 회	위 험
• 가처분 소득 및 여성인력의 수가 증가로 고부가 가공식품 수요증가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고부가부분에 대한 기회 무궁무진 • 탄산음료의 소비량을 볼때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임	• 미국과 FTA 실패시 커피포함 농산물 수출 타격 • 식음료 제조사가 폭동 타격이 될수 있음 • 맥주 세금인상에 따른 판매량 회복이 더딤 • 대출제한이나 금리 인상시 식음료부문에 악재

■ 식품 수입 현황

- 식품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최대 수입 품목은 옥수수임
 - 식품 수입액 : ('05) 19.7억 달러 → ('10) 41.6억 달러
 - 옥수수는 약 8억달러 규모로 농식품 수입에 가장 큰 비율 차지('10)
 - 농식품은 주로 아르헨티나, 미국에서 수입

- 한국의 대 콜롬비아 주요 농식품 수출규모는 증가추세이나 47만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적은 미약함
 - ('08) \$213,408 → ('09) \$85,462 → ('10) \$476,575
 - 주요 품목 : 물(190천불), 채소주스(99천불), 검(55천불) 등

■ 소비 특성 및 유통 현황

- 실질소득 증가로 편리한 식사대용을 찾는 소비자 수 증가
 - 통조림식품(특히 참치통조림) 판매량 및 매출액 증가 예상
- 초콜릿과 같은 비필수품 판매 증가
 - '09년까지 5년간 제과 판매량은 27%(현지명목통화기준) 증가
-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져 기능성 식품에 각광
 - 기능성 식품 구매경험 비율은 43.3%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
 - 기능성식품은 보고타가 가장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 부카라망가에서는 가장 낮은 소비량 보임
 - ※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어린이 27.5%, 청소년 11%, 출산연령 여성 27.5%가 빈혈증세
-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참치 가공식품 선호 추세
 - 참치 수출은 줄어들지만 국내 소비량은 증가 추세
 - ※ 국내 참치 및 참치부산물 판매액 : ('05) 27백만달러 → ('10) 36백만달러
- 하이퍼마켓, 소형 슈퍼마켓 등 현대적인 소매유통업 성장 기대
 - 콜롬비아 인구의 약 3/4이 도심지역에 거주, 인구의 2/3은 30세이하의 젊은층임

■ 한국식품(K-food) 진출방안

- 가처분 소득이 큰 고소득층 겨냥하여 차별화 전략 필요
 - 건강기능식품 시장, 와인시장 등 부유층을 타킷으로 하나의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
- 다각적 마케팅 툴을 활용하여 한국식품 홍보
 - 콜롬비아 소비자는 맛이 좋고 가격이 적정하면 색다른 제품을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시장 진입 필요

●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 재래시장이 식품판매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인구수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식문화 전파

- 한식 홍보 및 한국식당과 연계하여 한국식품을 알리고 이를 통한 소비 저변 확대

● 한류 마케팅 전개

- 콜롬비아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K-pop, 드라마, 자동차, 전자제품 등 문화, 경제적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K-food로 이전 확산이 되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콜롬비아 최대 팝 콘서트에 초청받은 한국의 유키스 등 K-pop 열풍

* 주류인 사회에 유명한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그리고 한국 연극제와 도서전 등 문화콘텐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생활저변에 한류가 아주 강한 편임 (예 : LG전자 현지TV공동 ‘K-POP by LG’ 전국경연대회)



부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발표문
 -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3.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식품 수출현황
4.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식품 수입현황
5. 우리나라의 바나나, 커피류 국가별 수입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12.7월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

구 분	상대국	추진 상황	농수산물 수입('11년) ^①	
			수입액(백만불)	비중(%)
발효 및 타결	칠레	○'99.12. 협상개시→ '04.4. 발효	835	2.5
	싱가포르 ^②	○'04. 1. 협상개시→ '06.3. 발효	104	0.3
	EFTA	○'05. 1. 협상개시→ '06.9. 발효	217	0.7
	아세안	○'05. 2. 협상개시→ '07.6. 발효	4,456	13.5
	인도	○'06. 3. 협상개시→ '10.1. 발효	476	1.4
	EU	○'07. 5. 협상개시→ '11.7. 발효	2,765	8.4
	페루	○'09. 3. 협상개시→ '11.8. 발효	131	0.4
	미국	○'06. 6. 협상개시→ '12.3.15 발효	7,581	23.0
	터키	○'10. 4. 협상개시→ '12.3.26 타결	54	0.2
	콜롬비아	○'09.12. 협상개시→ '12.6.25 타결	122	0.4
	소 계	10건 47개국	16,637	50.4
협상 중	호주	○'09. 5. 협상개시, 12차례 협상	2,820	8.5
	GCC	○'08. 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24	0.1
	뉴질랜드	○'09. 6. 협상개시, 4차례 협상	1,061	3.2
	캐나다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1,710	5.2
	멕시코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151	0.5
	인도네시아 ^②	○공청회(한국 '11.11, 인니 '11.12) ○'12.3.28. 협상개시 선언	1,003	3.0
	중국	○공동연구('05.~'10.5), 공청회(2.24), 사전 실무협의('10.9~), '12.5.2. 협상개시 선언 ○1차 협상 - 5.14, 2차 - 7.3~7.5	5,234	15.8
	소 계	7건 12개국	11,000	33.3
준비 또는 여건조성	일본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9차례 ('08.6~'11.5, '12.3~6)	637	1.9
	한·중·일 ^②	○공동연구('03.~'11.12), 정상회의에서 보고예정('12.5.)	5,871	17.8
	베트남 ^②	○공동연구 완료('10.6~'11.10)	904	2.7
	MERCOSUR	○민간공동연구('05.5~'06.11)	2,244	6.8
	기타	○말레이시아 ^② ,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5개국	1,581	4.8
	소 계	10건 21개국	4,462	13.5
합 계		27건 76개국(중복국가 제외)	32,100	97.2
농수산물 전체			33,023	100.0

① 우리나라 전체상품 수입액 : 524,413백만불

② 국가수 및 수입액(비중)은 중복 미포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7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기타 FTA 추진동향

가 협상 진행 중인 FTA

- (인도네시아, '12.3.28일 협상 개시) 기존 한·아세안 FTA 개방 수준을 고려하여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개방 폭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 (멕시코) '12.6.17일 양국 정상회담시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될 전망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현황점검회의를 통해 쟁점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차가 좁혀질 경우 공식협상 재개 계획
 - 쇠고기, 낙농품 등 주요품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와는 '09.11월 협상 이후 진전사항 없음

나 협상 준비 및 여건조성 중인 FTA

- (일본, '04.11월 이후 중단) 협상 재개를 위한 과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상재개 시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
- (한·중·일) 연내 개시 위한 실무협의 진행 중이며, 한·중 FTA 및 한·일 FTA 추진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 (베트남) 연내 협상개시 선언을 추진중('12.4.20일 공청회 개최)이며, 기존 한·아세안 FTA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등 추가 개방폭 최소화 노력
- (기타)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5개국), 몽골, 중미 5개국 등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중

제 목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1.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012.6.25(월) 오전(현지 시간)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고, FTA 협상타결 공동선언문(별첨)에 서명하였다
 - 양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6.25(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 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인
2.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상품양허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확보

3.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는 Economist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이자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며,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 교역구조 및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측의 고관세(예: 승용차 35%)를 감안할 때 이상적인 FTA 파트너

※ 2011년 주요 대콜 수출입 현황

- 총 교역액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무역수지 12.3억불)
- 주요 수출입 현황(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 승용차(4.6억불, 28.6%), 자동차부품(3.7억불, 22.8%)
 - 수입 : 커피류(1.1억불, 30%), 원유(75백만불, 19.7%), 합금철(59백만불, 15.5%)

-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한-콜 FTA는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수 '10년 14개 → '12년 28개로 증가

4.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한 바,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 중남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콜롬비아는 금년 5월 미국과 FTA 발효, 올 하반기 EU와 FTA가 발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콜 FTA 타결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칠레, 한-페루 FTA에 이어 세 번째 FTA로서,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재개·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 구축 실현

※ 콜롬비아의 주요 FTA 체결현황(기체결 9개, 협상중 4개)

- 콜-미 FTA(2012.5.15 발효), 콜-페루-EU FTA(2012.6월 서명예정), 콜-캐나다 FTA(2011.8월 발효), 콜-멕시코 FTA(1995.1월 발효), CAN(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MERCOSUR FTA(2005.4월 발효)

※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4개국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2012.6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창설협정에 서명

5. 양측은 금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된 이후,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 법률검토팀은 7.23(월)~7.27(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 검토회의 개최 예정
 -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6. 양국은 또한 협정문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시켜 조속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첨 부 :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번역본 포함)
2.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Joint Statement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olombia

Bogotá
25 June 2012

1. We, Minister for Trade of Korea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of Colombia, held a Trade Ministers' meeting on 25 June 2012 in Bogotá, Colombia and announced the official conclusion of the Korea-Colombia FTA negotiations, recognizing that all the remaining issues of the negotiations have been successfully resolved between the negotiating teams of the two countries
2. We share the understanding that the Korea-Colombia FTA is mutually beneficial to both sides, and that this agreement is a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FTA, consisting of chapters on trade in goods, service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invest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ade remed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 procurement,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mong others
3. We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Colombia FTA, among its main benefits, creat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favorable environment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ands market access opportunities through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gives incentives to promote bilateral investment, and enhanc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4. We recognize that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economies of Korea and Colombia, as well as cooperation efforts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have led to a rapid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in recent years, and share the view that the Korea-Colombia FTA will further contribute to promoting co-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5. We decide to promptly proceed with initialing, signing, and other follow-up actions to bring the Korea-Colombia FTA into effect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eho BARK
Minister for Trad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Sergio DIAZ-GRANADO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비공식 국문번역본)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보고타
2012년 6월 25일

1.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장관은 2012년 6월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모든 잔여 협상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며, 상품무역, 서비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투자,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통신,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협력 등의 챕터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해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며, 또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4. 양 통상장관은 양국간의 협력 노력 및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한·콜롬비아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최근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공동번영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5.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가서명, 서명 및 기타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콜롬비아 정부를 위하여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시장 개방 : 관세철폐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우리 96.1%, 콜측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플라스틱, 철강 등의 수출 증가 기대
- 콜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500cc-2500cc, 4×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콜-미 FTA에서 콜롬비아는 미국에 10년 관세철폐 양허)
 - 아울러, 우리 핵심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은 즉시철폐~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류(관세율 15~20%)는 즉시철폐~7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는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관세율할당,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쌀(협정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 쇠고기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세번은 19년 관세철폐로 양허(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필요)
 - * 탈·전지 분유 5개 세번에 대해서는 연간 100톤의 관세율할당 제공(쿼터내 물량 무관세 수입 / 증량 없음)
 -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철폐~3년내 관세철폐, 절화(cut flower, 25%)는 3년~7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는 5년내 관세철폐

■ 원산지

-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

■ 무역구제

-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정육 2개세번) 및 만다린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아울러,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산업피해 구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적용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반덤핑 마진 산정시 모든 개별마진을 포함한다는 제로잉(zeroing) 금지 원칙 적용 노력에도 합의

■ 위생 및 검역(SPS)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면서, SPS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무역기술장벽(TBT)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촉진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에 합의

- 상대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과 상이하더라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서비스·투자

- 시장개방 관련,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각기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 의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포함
- 일시입국(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 증진을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종사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등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지적재산권

- 소리·냄새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증명표장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기로 합의

■ 정부조달

- 양측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민자사업 포함) 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

-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를 인정

■ 협력

- 양측은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특히,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는 수출통제조치 발동에 앞서 사전 서면통보 및 협의를 의무화하여 콜롬비아가 수출통제를 발동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가능
-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전기·가전·IT,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교역·투자·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 문화협력 분야의 경우 양국은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갖기로 하였으며,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조성 및 정보 교류 등 추진을 위해 노력

3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식품 수출현황(금액순)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2202909000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 과즙음료 이외 기타)	60,804	50,872	864,035.4	716,534	1,321.02	1,308.5
2925112000	사카린의 염	0	0	11,650	151,735	0	0
0303799010	삼치(간장, 어란제외/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	0	47,284	138,042	0	0
2202109000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이외 기타)	172,990	192,438	64,915.2	66,145	-62.47	-65.63
2923201000	레시틴	0	0	16,120	55,520	0	0
2106903019	백삼조제품 (인삼차 이외 기타)	0	0	316	55,488	0	0
2106903011	인삼차	13	39	1,310.1	35,165	9,977.69	90,066.67
1902301010	라면	0	0	8,080.1	33,995	0	0
2309909000	사료용 조제품 (개, 고양이용 이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 사료첨가제 이외 기타)	0	0	4,420	28,870	0	0
1302120000	감초 엑기스 *원료용 의약품의 경우 신고 (약사법)	17.4	18,600	30.9	18,810	77.59	1.13
0602901060	선인장류(산식물)	85	3,250	860	17,180	911.76	428.62
2009801090	과실쥬스 (단일의 과실쥬스/ 복숭아, 딸기 이외 기타)	0	0	16,800	13,625	0	0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2106909099	조제품 기타	3,240	12,420	1,248	10,084	-61.48	-18.81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이외 기타)	0	0	4,960	8,429	0	0
2106903029	홍삼조제품 (홍삼차 이외 기타)	0	0	281.1	7,223	0	0
1209919000	기타(채소종자)	0	0	21.1	4,325	0	0
1302199099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35.1	2,751	60	4,280	70.94	55.58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간장, 어란제외/ 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	0	4,017	4,048	0	0
2106909030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	0	0	300	3,263	0	0
1905909090	베이커리, 성찬용 웨이퍼 등(귀리빵, 진저 브레드, 토우스트, 식빵, 미과, 제약용 캡슐 등 이외 기타)	0	0	1,239	3,152	0	0
1901909099	조제식료품(기타)	0	0	3,084.2	3,127	0	0
2208904000	소주	2,810	4,600	1,384	2,300	-50.75	-50
2202901000	인삼음료	4,850	2,749	1,473.4	2,111	-69.62	-23.21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112.7	668	250.5	1,862	122.27	178.74
2103901030	고추장	791.6	1,031	900	1,464	13.69	42
1104199000	곡물 (기타/압착·플레이크)	0	0	800	1,320	0	0
0904202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40	447	67.5	1,292	68.75	189.04
2002909000	토마토(식초, 초산 조제 이외 기타/전체, 조각상의 것, 토마토 페이스트 이외 기타)	0	0	1,156	1,273	0	0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1902191000	국수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	178.2	415	216	1,112	21.21	167.95
1902193000	냉면	105.6	216	502.5	1,103	375.85	410.65
2208701000	인삼주	84	900	229	1,068	172.62	18.67
2202902000	과즙음료	0	0	1,029.5	1,012	0	0
1902192000	당면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 것 이외 기타)	240	371	500	1,001	108.33	169.81
3504002090	기타단백질물질계	0	0	3	780	0	0
2103901090	장류 (간장, 된장, 춘장, 고추장 이외 기타)	75.9	161	200	721	163.5	347.83
2103901010	된장	223	158	576.2	649	158.39	310.76
2206002030	탁주	3,547	776	538	595	-84.83	-23.32
2104109000	수우프, 브로드와 수우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육류, 어류, 야채 이외 기타)	0	0	55	282	0	0
1515909090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아마인, 옥수수, 피마자유, 동유, 참기름, 들기름 등 이외 기타)	30	28	140	204	366.67	628.57
2202903000	식혜	0	0	229.6	201	0	0

* 자료 : KATI(농수산물 무역정보) 통계

4

대 콜롬비아 농수산물식품 수입현황(금액순)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14,361,038	65,347,333	17,197,422	107,307,473	19.75	64.21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97,355	1,976,398	83,196	3,097,005	-14.54	56.7
2101119000	커피엑스,에센스와농축물(기타)	253,521	1,388,775	362,310	2,160,454	42.91	55.57
0510004000	우황 (건조 여부 불문)	133	1,486,100	97	1,552,991	-27.07	4.5
0901210000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24,317	277,650	139,156	1,487,982	472.26	435.92
1701112000	사탕수수당 (조당/당도 98.5 초과)	339,327	306,685	1,198,425	1,433,853	253.18	367.53
0603199000	기타 절화(신선)	85,940	550,327	169,309	1,167,003	97.01	112.06
1806321000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블록, 슬램, 바아상/속을 채우지 않은 것)	35,035	242,108	103,352	688,129	195	184.22
2007999000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감귤류 이외 기타)	552,012	762,329	386,400	532,110	-30	-30.2
0603900000	절화(신선한 것 이외 기타)	21,699	207,066	63,221	498,451	191.35	140.72
1511909000	팜유, 분획물(조유, 올레인, 스테아린 이외 기타)	15,200	29,792	167,200	372,881	1,000	1,151.61
0803000000	바나나(플렌틴 포함/신선, 건조)	147,316	149,538	360,178	372,400	144.49	149.03
2106909099	조제품 기타	3	29	28,141	350,907	937,933.33	1,209,924.14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1504200000	어류의 유지, 분획물(간유 제외)	11,450	136,078	17,492	207,618	52.77	52.57
0301102000	열대어 (관상용/활어)	4,220	152,278	2,314	173,544	-45.17	13.97
1704909000	설탕과자류(추잉검,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120,347	210,829	80,020	152,287	-33.51	-27.77
1803100000	코코아 웨이스트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	20,000	138,177	0	0
0603110000	장미(절화/신선)	3,783	33,350	6,052	80,997	59.98	142.87
2106909040	자기 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16,002	192,958	5,044	52,745	-68.48	-72.67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10,415	26,056	7,325	24,862	-29.67	-4.58
4407999090	제재목(기타/기타)	0	0	26,330	13,496	0	0
0602901090	기타 화훼류	14	216	498	8,786	3,457.14	3,967.59
0603120000	카네이션 (절화/신선)	6,224	49,019	991	8,040	-84.08	-83.6
1805000000	코코아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첨가 한 것 제외)	31,000	172,441	1,002	6,685	-96.77	-96.12
0710100000	감자(냉동)	0	0	2,400	6,600	0	0
1212993000	화분	85	1,266	435	5,303	411.76	318.88
2008200000	파인애플 (기타 방법 조제)	4,363	10,666	1,462	4,222	-66.49	-60.42
0604990000	식물의 잎, 가지, 기타 부분(신선한 것 이외 기타)	33	439	23	1,494	-30.3	240.32
0106201000	뱀	1	540	6	1,283	500	137.59

HSCODE	명칭	2010년12월		2011년12월		전년대비	
		연간		연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1806901000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무게 2kg 초과, 블록, 슬랩, 바아상의 것 이외 기타)	181	610	81	1,170	-55.25	91.8
2918140000	시트르산	0	0	23	413	0	0
3505101000	텍스트린	0	0	40	378	0	0
1302390000	식물성 점질물 (한천, 로우커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0	0	20	248	0	0
2934992000	핵산	0	0	2	230	0	0
1806209090	코코아 조제품 (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이외 기타/무게2kg 초과)	0	0	50	219	0	0
0603140000	국화(절화/신선)	0	0	72	207	0	0
2006009090	기타식물 (설탕저장처리)	0	0	61	191	0	0
4412399090	기타합판(기타)	0	0	2	167	0	0
1701990000	자당 (고체의 것/향미, 착색에 첨가된 것 이외 기타)	280,000	238,067	200	135	-99.93	-99.94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7	63	22	130	214.29	106.35

* 자료 : KATI(농수산물 무역정보) 통계

바나나(HS:0803) 국가별 수입실적

국가	2010년		2011년		증감률	
	물량(kg)	금액(\$)	물량(kg)	금액(\$)	물량(%)	금액(%)
총계	337,907,381	210,354,677	352,670,729	245,521,571	4.37	16.72
필리핀	336,563,054	209,288,830	347,634,834	241,116,500	3.29	15.21
페루	19,644	20,435	1,363,483	1,421,607	6,840.96	6,856.73
에콰도르	975,897	781,640	1,768,744	1,328,304	81.24	69.94
과테말라	0	0	1,345,450	1,146,528	0	0
콜롬비아	147,316	149,538	360,178	372,400	144.49	149.03
스리랑카	0	0	179,101	122,143	0	0
인도네시아	0	0	18,592	12,895	0	0
대만	0	0	233	781	0	0
태국	0	0	107	320	0	0
중국	19,305	9,639	6	66	-99.97	-99.32
호주	79,872	48,525	1	13	-100	-99.97
미국	3	40	0	6	-100	-85
아랍에미리트	0	0	0	5	0	0
영국	0	11	0	3	0	-72.73
인도	0	11	0	0	0	-100
말레이시아	102,290	56,006	0	0	-100	-100
캐나다	0	2	0	0	0	-100

※ 자료원 : KATI

커피(HS:0901) 국가별 수입실적

국가	2010년		2011년		증감률	
	물량(kg)	금액(\$)	물량(kg)	금액(\$)	물량(%)	금액(%)
총계	111,624,760	371,612,050	121,855,206	618,626,075	9.17	66.47
브라질	19,966,205	62,103,692	23,884,225	123,237,899	19.62	98.44
콜롬비아	14,388,649	65,660,931	17,336,624	108,795,740	20.49	65.69
베트남	33,638,551	51,143,482	38,765,131	86,694,901	15.24	69.51
온두라스	12,171,834	40,900,532	11,074,100	65,828,066	-9.02	60.95
페루	7,333,211	32,109,378	9,599,456	54,167,430	30.9	68.7
미국	2,315,430	24,692,696	2,074,566	26,860,089	-10.4	8.78
스위스	351,242	9,971,391	530,800	23,717,163	51.12	137.85
과테말라	5,095,864	19,218,132	2,825,386	19,078,295	-44.56	-0.73
이디오피아	2,908,512	10,135,611	3,437,426	18,040,975	18.19	78
이탈리아	833,782	10,813,944	851,616	13,130,065	2.14	21.42
인도	683,408	3,098,983	2,214,907	12,552,252	224.1	305.04
코스타리카	808,423	3,429,242	1,612,314	10,482,464	99.44	205.68
인도네시아	5,978,861	11,081,707	1,497,280	8,778,364	-74.96	-20.79
중국	580,466	2,149,786	1,563,334	8,542,466	169.32	297.36
영국	41,694	645,969	353,704	6,854,018	748.33	961.04
케냐	395,948	3,086,453	453,576	4,225,394	14.55	36.9
독일	398,591	2,111,329	443,384	4,083,416	11.24	93.41
스페인	466,149	1,889,707	532,706	3,344,394	14.28	76.98
일본	559,119	5,074,317	248,685	2,829,959	-55.52	-44.23
기타	2,708,821	12,294,768	2,555,986	17,382,725	-5.64	41.38

※ 자료원 : KATI